

서울특별시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355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년 3월 5일
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조례에 기반을 두고 개발·연구된 역사교육 프로그램 등의 공유와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규정되어야 할 사항에 “역사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의 공유·활용”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.
- 또한, 정책 간의 유기적 연계와 효과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역사교육 전반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역사교육활성화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.

2. 주요내용

-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 하나인 중 “역사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의 개발·연구”에 “공유·활용을 추가하고자 함 (안 제5조제3호).
- 역사교육활성화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7조~제12조 신설)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3호 중 “개발·연구”를 “개발·연구와 공유·활용”으로 한다.

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,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역사교육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역사교육활성화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1.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역사교육 활성화 사업 기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역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2. 교육기관 또는 교육 관련 단체 등에 종사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
3.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4. 그 밖에 교육감이 역사교육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9조(위원의 임기)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간사)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둔다.

② 간사는 역사교육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.

제12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 정기회의는 연 2회,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역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2. 교육기관 또는 교육 관련 단체 등에 종사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
3.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4. 그 밖에 교육감이 역사교육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9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간사)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둔다.

② 간사는 역사교육 관련 업무 담당

<신 설>

제7조 ~ 제9조 (생 략)

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.

제12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 정기회의는 연 2회,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
제13조 ~ 제15조 (조례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)